

행정정보 비공개 세부기준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

1. 「보안업무규정」 제22조 내지 제24조에 의하여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정보
2.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하여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 중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3. 「형사소송법」 제47조에 의하여 공판 개시 전 소송에 관한 정보
4.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4조에 의한 재산 비공개 대상자와 직계 존비속의 등록재산 및 주식거래내역 등 재산등록에 관한 정보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5.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에 의하여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과정 및 내용에 관한 정보
6.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하여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치료 등에 관한 정보
8.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사항
9.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등

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1.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공사경영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2. 직장예비군 편성 및 예비군에 관한 정보, 직장민방위대 편성표
3. 보안 정보 등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1. 보상관련 감정평가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정보
2. 수용 재결이의신청 및 결정에 관한 정보
 - 재결(이의)보상금 산정 및 지급조서, 공탁관련 정보 등
3. 수사관계 조회사항 및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자
4.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위험물의 저장위치,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5. 인감 및 직인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6. 개인 및 법인 등의 토지소유에 관한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1.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판결 전 재판기록,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2.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정보
3. 피의자가 관련 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범죄사실을 위한 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사항 등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1. 각종 위원회 운영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2.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정보
 - 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공공기관 내부심의 등을 위하여 수집한 정보,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
3.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 조사 또는 각종 개발계획 및 검토안 등
4. 용역 및 연구 등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5.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
 -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6. 민간위탁업체 선정·심사에 관한 정보
7. 고충민원 조사관련 정보
8. 조직 개편 및 직제 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과정에 있는 정보
9. 예산편성 요구 및 심의조서 등 예산편성과정에 있는 정보

10. 사장 추천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 의사 결정과정에 해당하는 정보
11. 각종 정관 및 제규정의 제, 개정 승인을 위한 내부검토에 관한 정보
12. 승진심사 과정에 있는 정보 (승진심사회의록 등)
13.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 문제은행 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14.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인사교류, 연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과정에 있는 정보
15. 노조 및 직장협의회 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16. 자금배정·여유자금 증식과 관련 정보
17. 공사금고 지정관련 문서, 계약관련 문서, 영업 관련 비밀 정보
18. 입찰예정가격 및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19. 산업단지계획 심의 등 내부검토 자료
20.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21. 상가·대지 예가결정 및 주택 등의 분양가격산정, 임대료 책정을 위한 감정평가서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22. 각종 법령, 제도개선 및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내부 검토 중에 있는 사항, 정부·지자체 및 타기관과의 각종 협의사항, 회의결과, 협의자료,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23. 공사의 건설사업 계획수립기준 관련정보 및 건설사업 승인 업무에 따른 관계 기관 협의 및 각종 심의업무 관련 정보
24. 지구지정 설계용역자료, 진행 중인 용역의 각종 설계도서 작성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부터 공사 발주 전까지의 각종 설계도서 및 공개하지 아

이하기로 결정된 연구용역 결과 등에 관한 정보

- 25. 특정 개인 식별이 가능한 문서, 법인 등의 사업계획, 생산기술 등의 사항으로서 개인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침해 또는 불이익 정보
- 26.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업체 선정관련 신청 및 평가내용
- 27. 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공사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p>법 제9조 제1항 제6호</p>	<p>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p> <p>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p> <p>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p> <p>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p> <p>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p> <p>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p> <p>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p>
--------------------------	--

- 1. 용지보상, 수탁사업, 용지분양, 토지거래통계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 관련 정보
 - 타인의 보상금 산정 내역 및 보상금액, 토지수용재결관련 정보 등 (재결서, 감정평가서 등)
 - 호적기재사항(이름, 성별), 경력활동사항(학력, 직업), 심신관련사항(건강상담 표), 재산상황(채권·채무 관련 정보, 납세증명서) 등
 - 보상과 관련한 계약서, 보상관련 서류, 재결서, 감정평가서 등 개인(법인) 재산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보
 - 개인·법인의 토지거래내역
 - 개인별 공급토지 명세서, 택지분양 내역, 주택·상가·대지 계약자 내역

및 명의변경, 대출자 내역, 용지보상내역, 보상대상자 정보(보상대상자, 이해관계인, 조합원,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 등

- 입찰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 적격심사평가 관련서류, 계약서 및 첨부서류, 입찰서, 내역서 등 입찰 관련 자료의 개인정보
 - 공사의 각종 심의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명칭의 형태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감사결과 등에 관한 개인정보
 -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응모서류
2.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공개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면허·등록·허가·인가 등을 위해 제출한 민원서류중 개인의 인적사항
 4. 각종 신고·고발에 대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5.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6. 특정 직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인사교류 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각종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9. 비정규직 직원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 등)
 10.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11. 시스템 등 유지보수 용역 수행을 위한 민간업체 직원 신원조회 시 개인 정보
12. 보상금 산정 및 지급조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정보
13. 보상관련 감정평가에 관한 정보
14. 징계관련 정보
15. 검찰, 경찰에서 통보되는 범죄처분 처리결과에 관한 정보 (인적사항, 범죄내용, 처리결과 등)
16. 공사, 공단 (이)사장 및 이사, 감사의 개인연봉 책정 등 연봉계약 체결에 관한 정보
17. 각종 정보시스템 내 개인에 관한 정보
18. 연구정보, 법인 등의 영업비밀
19. 직원 급여 압류에 관한 정보
20. 개인 및 법인별 토지소유에 관한 정보
21.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

1. 해당 정보가 영리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영업비밀 사항에 해당되는 정보
 - 택지개발사업 등 공사가 추진하는 각종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및 사업 분석 등의 자료와 각종 협약서(LOI, MOU 본협약서 등)
 - 주택·대지·복리시설의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원가관리(준공원가) 및 사

업성 분석에 관한 정보

- 용지보상 관련 내부 방침
 - 용지 공급 관련 지침 또는 내부방침
 - 조성원가 산정 세부내역, 제비용률 및 할인율 산정내역, 수지분석자료. 단, 조성공개 공개대상 사업지구의 공개대상항목은 비공개대상에서 제외하며, 그 외 사업지구도 이를 준용함.
 - 각종 용역·공사 관련 발주서류, 착수서류, 기성서류, 설계변경, 준공서류
 - 입찰 지정(예정) 업체의 경영내용 및 영업 관련 정보, 선정관련 제출자료(제안서 평가 등)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기술평가 결과, 과업수행 결과
 - 턴키(대안)입찰공사 설계평가 심의위원별 평가점수 및 평가위원 명단
 - 친환경 건축물인정 신청자료 및 인정평가 심의내용, 주택성능 인정신청 및 인정평가, 심의내용에 관련된 정보
 - 위탁연구 수행 시 위탁기관으로부터 받은 각종 관련된 정보
 - 주택시장 정책, 동향 등 마케팅 조사, 분석 등에 관련된 정보와 판매촉진 및 홍보 전략 관련 정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업체가 제출한 영업 관련 정보, 심사서류 및 심사평가 결과 등에 관한 정보
2.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3.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4.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정보
 5. 용지(보상, 공급)관련 감정평가업자 선정관련 제출자료 및 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자료
 6. 관광단지개발 등 협상 추진사항 정보

<p>법 제9조 제1항 제8호</p>	<p>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p>
--------------------------	--

1. 각종 개발사업 중 아직 확정·발표되지 않은 사업에 관한 정보
2. 도시계획 등과 관련하여 결정·승인절차가 이행중인 정보
3. 주택건설 승인 심의 중 사항
4. 운영계획 수립 자료, 심의자료, 신규사업 우선순위 결정 자료 등 부동산 투기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자료·사업 후보지 조사 관련자료
5. 택지개발사업지구, 산업단지개발사업지구, 신도시 등의 개발사업지정고시 전의 관련 자료 및 예정지구 제안 자료 등
6. 사업예정지 선정을 위한 조사, 지구지정제안, 협의자료 및 주민공람 공고 이전의 개발계획 등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7. 경기 동향 및 전망분석 내부 자료로써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8. 재정비촉진사업 관련 총괄사업관리자 업무협약 및 재정비촉진 사업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